

◦ 한국장학재단에서는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5(중복지원의 방지)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에 따라 “중복지원 방지시스템”을 운영하고 있으며, 각 기관에서 대학(원)생에게 학자금(장학금)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“중복지원 방지시스템”에 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
1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란?

- 학자금 지원의 균등한 배분과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학자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

2. 중복지원 범위

- 학자금 대출, 장학금 등 학자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자 등록
- 장학금 수혜금액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중복지원자로 등록
- 사설 및 기타, 정부, 대학 교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모두 포함
- 근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 일부 장학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
- 교내 장학금은 근로, 공로, 도우미등 일부 장학금을 제외하고 모두 중복지원에 해당

3. 중복지원자 명단 및 금액확인

- 한국장학재단 전화문의(1599-2000)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로그인 → 사이버창구에서 확인

4.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, 우선 상환 실시

-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우선으로 실시해야 함. 이를 어길 경우 「한국장학재단」 중복지원자 명단에 등록됨

5. 중복지원자 명단에 등록되었을 경우 불이익 발생

- 한국장학재단에서 반환 및 상환 통지가 되며 기간 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**법적인 변제 의무 발생**
- 중복지원 해소(수혜 학자금 상환 및 반환)시 까지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불가

6. 중복지원 해소(상환 및 반환) 절차

가. 학자금 대출자 : 장학금 수혜 후 대출금 미상환의 경우

*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 전화문의 ⇒ 상환금액 및 가상계좌 확인 ⇒ 대출금 상환

나. 장학금 중복 수혜자 :

*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 전화문의 ⇒ 반환금액(=등록금-장학금) 확인 ⇒ 수혜기관으로 반환